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8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의자 : 최혁진 · 윤종오 · 이성윤
박은정 · 한창민 · 황운하
박지원 · 조계원 · 정혜경
손솔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위탁 거래, 입찰·제안요청, 투자협의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와 고의·과실,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

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 제9호의2, 제25조제5항, 제28조의1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를 “영업활동에”로, “것으로서”를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등 기술에 관한 자료
 - 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관한 자료
 -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 라. 그 밖에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의 정보
- 9의2. “기술탈취”란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를 말한다.
- 가. 대기업(대기업 중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말한다)이 중소기업으

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에 관한 것일 것

나.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또는 사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이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에게 경쟁상 불이익 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 우려가 현저할 것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기술탈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에 제2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기술탈취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 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2항 또 는 제5항”으로 한다.

법률 제21191호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3제3항 전단 중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를 “제25조제2항 · 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5조제2항을”을 “제25조제2항 또는 제5항을”로 한다.

제6장에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7(입증책임의 특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탈취에 관한 소송에서는 제25조의2에 따른 위탁기업의 입증책임과 함께 수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게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기술거래 · 위탁 ·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제40조의8(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보호대상 기술임을 명시 통지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요구한 경우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해당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 유지 또는 비사용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0조의9(손해배상책임의 특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제40조의8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법원은 손해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의2제2항제2호 중 “손해의 5배 이내”라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제4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의 구체적인 산정지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탁기업이 기술탈취로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
2. 수탁기업이 입은 피해의 규모 및 정도
3.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의 악의성 및 지속성
4. 기술탈취 방지 및 억지력 확보의 필요성

제40조의10(소송비용의 부담) 법원은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패소한 위탁기업에게 수탁기업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기술감정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및 청구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11(수탁기업의 법률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하는 수탁기업에 대하여 법률상담·소송대리·소송비용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에 따라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의3. (생 략)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8의3. (현행과 같음) 9. -----영업활동에-----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
<신 설>	가.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등 기술에 관한 자료
<신 설>	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관한 자료
<신 설>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신 설>	라. 그 밖에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

<신 설>

상의 정보

9의2. “기술탈취”란 제25조제2

항에 따른 유용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
위를 말한다.

가. 대기업(대기업 중 자산총

액 · 매출액 ·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말
한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에 관한
것일 것

나.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
적 또는 사용 범위를 현저
히 벗어나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
여 사용하는 행위이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
하게 하는 행위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에게 경쟁
상 불이익 또는 경제적 손
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
생 우려가 현저할 것

10. ~ 13. (생략)

제25조(준수사항) ① ~ ④ (생

10. ~ 13.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수사항) ① ~ ④ (현행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 · 방식 · 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 · 방식 · 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신 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7(입증책임의 특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탈취에 관한 소송에서는 제25조의2에 따른 위탁기업의 입증책임과 함께 수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게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기술
거래 · 위탁 · 협력 관계에 있
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탁기
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는 점

<신 설>

제40조의8(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보호대상 기술임을 명시 통지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한 경우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해당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 유지 또는 비사용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 설>

제40조의9(손해배상책임의 특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제40조의8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은 손해액의 10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
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
조의2제2항제2호 중 “손해의 5
배 이내”라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배상
액을 정할 때 제4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의 구체적인
산정지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탁기업이 기술탈취로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
2. 수탁기업이 입은 피해의 규
모 및 정도
3.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의
악의성 및 지속성
4. 기술탈취 방지 및 억지력 확
보의 필요성

제40조의10(소송비용의 부담) 법
원은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
상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패소한 위탁기
업에게 수탁기업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 ·
기술감정 비용 등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하는 소송비용의 구체적
인 산정 및 청구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11(수탁기업의 법률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하는 수탁기업에 대하여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에 따라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